

- 주의 사항 -

※ 본 공고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지정)에 선정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고로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와 무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2차) : 21억원, 7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지원내용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2차) : 21억원, 7개 과제

□ 지원유형 : 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전략분야

- ① 기계금속, ② 그린에너지, ③ 디스플레이, ④ 반도체, ⑤ 자동차, ⑥ 전기전자,
⑦ 바이오, ⑧ 미래소재, ⑨ 비대면 디지털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기업(강소기업 100+)

* 단, '21~'22년 강소기업100 R&D과제의 기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지원 규모인 수출지향형 과제와 동시 선정 불가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6.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 연구개발 기간 예시 >

접수시기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상반기	'23.6.1~'23.12.31 (7개월)	'24.1.1~'24.12.31 (12개월)	'25.1.1~'25.12.31 (12개월)	'26.1.1~'26.12.31 (12개월)	'27.1.1~'27.5.31 (5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3-11호, '23.2.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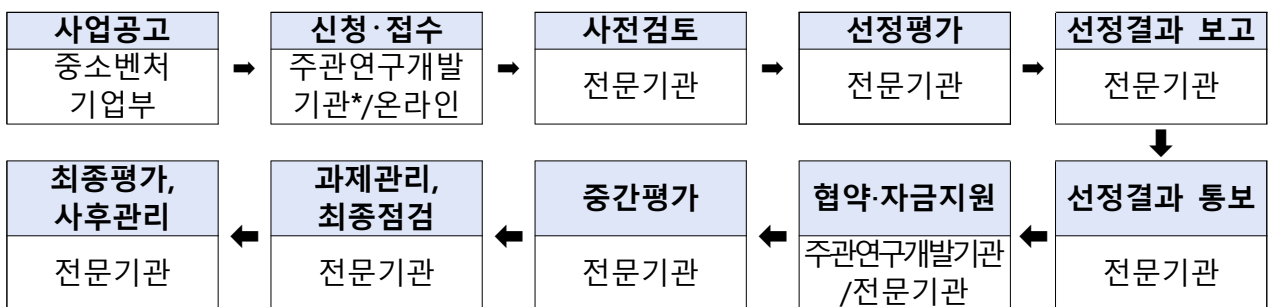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375	9.4	84.6	94	469	7개월
2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12개월
3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12개월
4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12개월
5차년도	125	3.2	28.8	32	157	5개월
합계	2,000	50.1	450.9	501	2,501	48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	-	20	100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기존 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 강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대면평가(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 선행 후 대면평가(화상회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하고, 추천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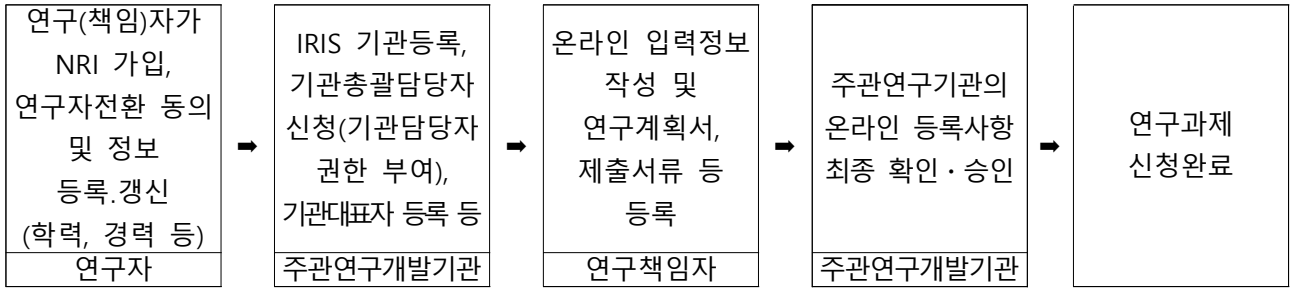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상반기, 6월 지원과제) '23년 4월 24일(월) ~ 5월 16일(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
		본문2	○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④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u>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u> .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 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⑦	신청자격 확인서류 I * 강소기업100+ 선정 확인서		○

5. 기타사항

□ (필수) 과제 선정 시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지원

- (지원대상) “강소기업100 과제”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핵심특허 대응전략, R&D 정교화 전략, 신규IP 창출 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IP-R&D 전략수립(심층지원형) 지원을 위한 비용(33백만원)을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3~4차년도 과제수행 중 필요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추가 지원 가능

□ (중간평가) 개발기간 2년차 종료 전, 전문기관에서 실시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조기 종료”, “중단”으로 처리하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강소100 성과평가와 동시 진행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참고 1

중소기업 100 과제 유의사항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아래의 [R&D졸업제], [3책 5공],[역방향 지원 제한] 규정과 무관

[R&D졸업제]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술개발
 - * 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는 졸업제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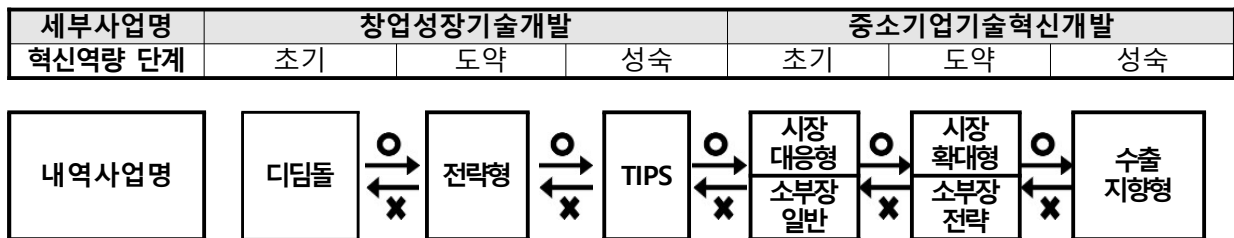
[3책 5공]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3책 5공 적용 여부는 기존과 동일하며,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3책5공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대상에서 제외
 -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역방향 지원 제한]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



참고 2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지원 내용

□ 프로그램 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연구개발기관 부담금(R&D비용)

구분	IP-R&D전략 지원		
	심층지원형(총 6,000만원)		
지원 비용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R&D 예산)	현물
	1,500만원	3,300만원	1,200만원
지원 기간	3.5개월		
지원 내용*	①, ②, ③ 중 택2		
지원 내용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 주요기술 국내·외 특허 DB 확보 • 소재·부품·장비 해외 경쟁사에 대한 국내·외 핵심특허 도출 및 대응전략 수립 ※ 단, 핵심지원형은 국내특허에 한하여 대응전략 지원		
② R&D 정교화 전략	• 핵심특허·노하우 확보를 위한 R&D 방향(과제) 제시 • 국내·외 특허분석으로부터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정보 제공		
③ 신규 IP 창출 전략	• 국내·외 강한 특허 확보 전략 수립 • 지재산권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등		

*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IP 역량진단>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과업범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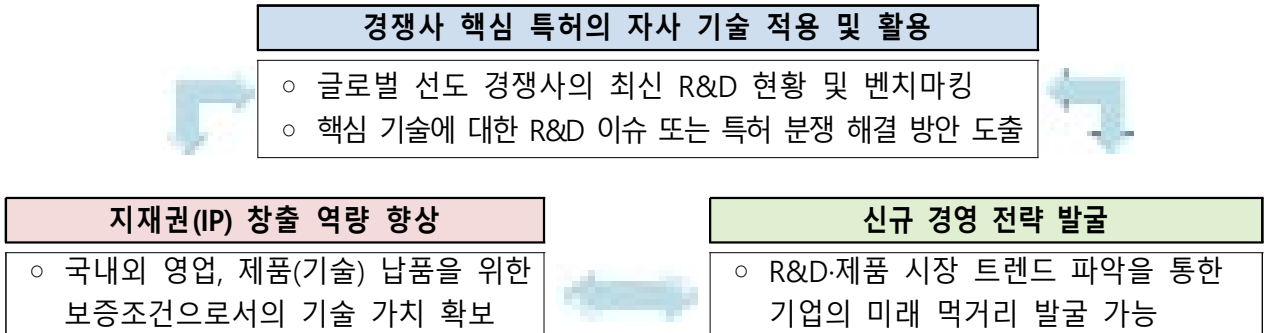
□ IP-R&D 지원 결과

지원 내용	지원 전	지원 후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관련 유효 특허 데이터 부족 • 경쟁사 특허 침해 등 잠재적 특허 분쟁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국내/외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경쟁사 핵심 특허 데이터 확보 •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② R&D 정교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R&D 기술 벤치마킹 정보 부족 • 유사 기술 중복 개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활용 가능 특허(특허 기한 만료 기술 등)의 R&D 개발 적용 • 중복 R&D 개발 회피를 통한 우리 핵심 기술력 확보
③ 신규 IP 창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기술에 적합한 권리 범위 미흡 •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부족으로 해외 경쟁사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既 보유 특허 검토를 통한 특허 권리 범위 재정비 • 소재·부품·장비 부문 R&D 연계 국내외 신규 특허 창출 유도

※ 상기 지원 결과는 IP-R&D 지원 전략별 결과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한 IP-R&D 지원 유형 및 내용(IP Need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IP-R&D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사업공고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IP-R&D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R&D 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IP-R&D 협약	IP 역량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전략전문가(PD)가 IP-R&D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 현장 방문 및 IP-R&D 과업 범위 협의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활용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IP-R&D 지원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R&D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IP-R&D 밀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선택 유형별 지원 ○ 최종보고회 개최 및 IP-R&D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